

16.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086호 1999. 1. 21

개 정 이 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보수교육을 폐지하고 책임감리대상공사의 범위를 축소하며 일부 과태료의 금액을 낮추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 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우 종전에는 신규교육외에 3년마다 1회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규교육외의 의무적 보수교육은 이를 폐지하여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령 제7조제2항).
- 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50억원이상의 건설공사에서 1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발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내실있는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령 제50조제1항제1호)
- 다. 종전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자격을 건설분야의 종사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폐지하여 감리전문회사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감리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함(현행 제54조제2항 삭제).
- 라. 종전에는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하여는 고급기술자 및 고급감리원 자격이하까지 이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학력제한을 완화하여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 자격까지 허용하도록 함(령 별표 1 및 별표 3).

마.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를 2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 조정하는 등 일부 과태료를 부항 조정함(령 별표 7).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7호중 “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를 “시설안전기술공단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고, 동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9호를 삭제한다.

8.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제7조제2항중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매 3년마다 1회이상”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된 날부터 3년이내에”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월이내

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4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정부투자기관·연구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신기술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를 “정부투자기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연구원으로 하여금 신기술에 관한 전문·기술적인 사항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법 제9조제3호의 건설기술정보센터”를 “연구원”으로 한다.

제36조중 “1억5천만원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이상”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설계등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를 “설계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로 한다.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37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전의 제4항)중 “보증서의 종류 및 보증방법”을 “보증서 등 보증의 방법”으로 한다.

④법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종류는 기본설계보증, 실시설계보증과 손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계등 용역에 대한 보증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으로 구분한다.

⑥보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선정하여야 한다”를 “선정하거나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7조의5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공장인증의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및 제주개발건설사무소

제50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를 제외한다.”를 “다음 각호의 공사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50억원이상”을 “100억원이상”으로 하며, 동항제1호 타목 내지 하목 및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저목을 삭제한다.

타. 폐기물처리시설건설공사

파.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너. 하수관거건설공사

제5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 및 국가기

밀관련 건설공사

7. 원자력시설공사

제5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자는 이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제3호중 “연구원으로”를 “건설감리협회”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200억원이상”을 “300억원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5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을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50억원미만”을 “100억원미만”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의10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⑤보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60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 또

는 국립건설시험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를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로 한다.

제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인증을 위한 전문·기술적인 심사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 및 제5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관련)

1.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초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자

비고

-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다. “경력자”는 건설기술관련 자격·학력이 없는 자중 건설관련 해당 분야의 경력과 소정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 경력자에 대한 경력 및 기술능력 인정방법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등급

종류 및 등급 직무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금속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전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자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종류 및 등급 직무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 경	도시계획 조 경	조 경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	공장관리	공정관리 승강기	공정관리 승강기
교통	교 통	교 통	교 통

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관련)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또는 건축사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8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4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초급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건설공사업무에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검측 감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에 수행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1.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분야의 기술자격자와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로 구분되며,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용융(용융지질), 기계(유체기계·산업기계·건설기계정비·배관설비), 화공 및 세라믹(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 통신, 정보처리,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기술자격자중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기술자격자중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건축, 국토개발(지적·조경), 안전관리, 환경, 기계(공업배관·건축배관·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 금속(비파괴검사관련종목), 전기(철도신호), 전자(공업계측제어), 통신(통신기기·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무선통신·방송통신), 정보처리, 광업자원(광산보안·시추)을 말한다.
4.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기술분야의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위 표에서 정한 기간이상 해당 분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장교 또는 장기하사관으로 복무한 자를 말한다,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63조제3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1호	50만원이하
2.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1호	50만원이하
3.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2호	100만원이하
4. 법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설계등 용역을 수주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3호	100만원이하
5. 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4호	50만원이하
6. 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4호	200만원이하
7.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직을 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5호	100만원이하
8.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용역을 수주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6호	100만원이하
9.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7호	200만원이하
10. 법 제36조의18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8호	100만원이하
11. 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감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43조 제1항제9호	150만원이하
12.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43조 제2항	30만원이하

주택회보